

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중개형)약관

제정일 2021 년 03 월 22 일

개정일 2021 년 03 월 25 일

2021 년 04 월 26 일

2021 년 05 월 10 일

2022 년 01 월 01 일

2023 년 03 월 02 일

2023 년 03 월 02 일

2023 년 10 월 16 일

2024 년 08 월 23 일

2025 년 07 월 01 일

제 1 조(약관의 목적) ① 이 약관은 고객과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)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위탁매매계좌)를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이 약관은 ‘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’ 등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재산에 대한 매매거래 시 적용되는 금융상품별 약관과 함께 사용된다.

제 2 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.

1. 1 명당 1 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
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
 - 가. 계약의 형태가 위탁매매계약 또는 매매계약일 것
 - 나. 자본시장법 제 72 조에 따른 신용공여를 금지할 것
 - 다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아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이체하는 것이 제한될 것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
4. 계약기간이 3 년 이상일 것
5. 총 납입한도가 1 억원(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연간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 이하이고,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

$2 \text{ 천만원} \times [1 + \text{가입 후 경과한 연수} (\text{경과한 연수가 4 년 이상인 경우에는 4 년으로 한다})] - \text{누적 납입금액}$

② 제 1 항에 따른 “거주자”란「소득세법」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.(이하 같다)

제 3 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이하 “계좌”라고 한다)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“이자소득 등”이라 한다)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2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2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1.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 세 이상인 자
2.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 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

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4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)
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)
3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시행령에 따른 농어민(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)

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 개 과세기간 중 1 회 이상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의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요건 또는 비과세 한도금액과 관련하여 제 3 조② 항을 적용할 때 다음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’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: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규정을 적용한다.
2.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’란 매년 1 월 1 일부터 7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24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저축등에 가입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자가 해당 저축등의 가입 신청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
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1. 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5 항제 2 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 11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가. 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 11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.) 보다 작은 경우

$\frac{\text{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}}{\text{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}} - \text{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}$

나. 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(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 11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.)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

$1 - \text{「소득세법」 제 129 조제 1 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}$

2. 제 1 호를 적용할 때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18 제 1 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,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 분의 14 로 하여 계산한다.

제 4 조(계약기간) ①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 년이 넘는 범위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기간으로 하며,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3 개월 전부터 만료일 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20 일 전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할 때에는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 5 조(위탁의 방법 등)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.

1. 문서에 의한 방법
2. 전화, 전신, 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
3.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

② 고객이 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.

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④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,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,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6 조(대상 금융상품) 고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거래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106 조제 2 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(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자본시장법’이라 함) 제 3 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)
2.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 24 조에 따른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
3. 「소득세법」제 17 조제 1 항제 5 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
4. 「소득세법」제 17 조제 1 항제 5 호의 2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
5. 「소득세법」제 17 조제 1 항제 9 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
6. 「소득세법」제 88 조제 3 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
7. 「부동산투자회사법」제 2 조제 3 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(리츠)
8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보유한 제 6 호에 따른 주식을 통해 취득한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6 제 3 항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
9. 「소득세법」제 16 조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

제 7 조(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)

-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(securities.miraeasset.com > 이용안내/문의 > 이용안내 가이드 > 트레이딩 가이드 > 트레이딩 > 매매 수수료/예탁금이용료 > 예탁금이용료)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운용수익, 예금자 보험료,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,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.
- ④ 고객은 제 3 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. 다만,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(SMS, MMS 등)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.
- ⑤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9 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.

제 8 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1.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, 종목·품목, 수량, 가격, 수수료 등 모든 비용,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.

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(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·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)으로 통지할 것. 다만,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.

가. 서면 교부

나. 전화, 전신 또는 모사전송

다. 전자우편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

라.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

마.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

바.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세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

②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,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9 조(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)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·손익내역, 월말 잔액·잔량현황(이하 “월간 매매내역등”이라 한다)을 다음 달 20 일까지, 반기동안 매매,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·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8 조제 1 항제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·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.

1.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·잔량현황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
2. 반기동안 매매,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·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
3.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

제 10 조(위탁수수료) ①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터 <별첨>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.

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제 11 조(매수증권에 대한 유상증자 등) ① 고객은 유상신주 등의 청약 의사가 있는 경우 청약일까지 회사에 주금을 직접 납입하거나 고객 계좌의 예탁금을 주금으로 납입해 달라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고객은 유상신주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청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청약 금액은 1 주 발행가액의 정수배로 청약하여야 한다.

③ 고객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부족 등으로 유상신주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약금액(비저축금)을 입금할 수 있으며 별도로 입금한 청약금액 중 제 2 조제 1 항제 5 호의 납입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제 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.

④ 고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비저축금으로 유상신주를 청약한 후 배정받은 주식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잔여 비저축금은 인출해야 한다.

제 12 조(부득이한 계약해지 사유) 고객의 사망, 해외이주 또는 계약 해지 전 6 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
1. 천재지변
2. 고객의 퇴직
3. 사업장의 폐업
4. 고객의 3 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의 발생
5. 회사의 영업의 정지, 영업인가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
제 13 조(중도해지) ①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(제 12 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 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받으며, 해당 소득은 추징일의 귀속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다.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 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로 보지 않으며, 회사는 인출일 기준 예상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③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.

제 14 조(계약의 종료시 계좌내 재산처리) ① 제 4 조에 따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거나 제 13 조제 1 항에 따라 고객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모든 예탁재산을 환매·매도하여야 한다.

② 고객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지체없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예탁재산을 환매·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제 3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예탁재산을 현금화하지 않고 운용현상대로 지급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회사는 예탁재산을 실물보유상태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고객은 제 3 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운용현상대로 지급되는 예탁재산에 한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.

제 15 조(청약의 철회) ① 고객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6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(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)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<별첨>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.

제 16 조(위법계약의 해지) 고객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금융상품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 17 조(약관의 변경 등)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(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, 신·구대비표 등)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3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

② 제 1 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개별통지(신·구대비표 포함)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,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(화면출력 포함)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관계법규등 준수)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,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전자증권법, 같은 법 시행령, 전자등록업규정,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,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(이하 “관계법규등”이라 한다)을 준수한다.

제 19 조(분쟁조정)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, 한국금융투자협회,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 20 조(관할법원)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66 조의 2 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·무선·화상통신·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. 다만, 제소 당

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「민사소송법」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21 조(관계법규등 준용)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.

② 이 계약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'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' 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.

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한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4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이 약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첨〉

1. 제 10 조제 1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위탁수수료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인터넷 홈페이지(securities.miraeasset.com > 이용안내/문의 > 이용안내 가이드 > 트레이딩 가이드 > 트레이딩 > 매매수수료/예탁금이용료

2. 제 15 조제 2 항의 “〈별첨〉에서 정하는”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.

– 반환지연기간 : 철회요청일 + 3 영업일부터 반환일까지

– 연체이자율 : 9.9%

※ 연체이자 = 반환대상금액 X 연체이자율(9.9%) X 반환지연기간 ÷ 365(윤년의 경우, 366 일)

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